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 하남시장(복지정책과)

제출일 : 2025. 10.

1. 제안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2026. 3. 27.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대상자가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 및 통합지원 지역계획 매년 수립·시행(안 제3조~제4조)
- 나. 통합지원 정책의 사업 명시(안 제5조)
- 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조사·판정, 의견 진술 기회 제공(안 제6조)
- 라. 각종 돌봄 서비스의 통합지원 제공, 변경 통보 등 규정(안 제7조)
- 마. 통합지원회의 운영(안 제8조)
- 바. 각 동 및 보건소 등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
- 사. 시, 보건소 및 동에 전담·지원 조직 설치 근거 명시(안 제10조)
- 아. 관련기관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안 11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한종수)

-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포용적 돌봄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며, 특히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 연계되어 지역 차원의 제도 정착과 법 이행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담조직 설치 및 책임체계 명확화, 전문인력 양성, 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의 실질적 추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3.27.] [법률 제20445호, 2024.9.20.,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2.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임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할 것
3.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의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5.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6.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군·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